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46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4.

발 의 자 : 서미화·허성무·이정문
박정현·조승래·이광희
박홍배·최혁진·이연희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·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,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.

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

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,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,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행정적”을 “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
2. 제3항에 따른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 업무
3. 제4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4조의2(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<u>행정적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4조의2(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·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·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</u> ----- -----.</p> <p>⑤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식품위생법」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</u></p> <p>2. <u>제3항에 따른 교육·홍보 및</u></p> |

| | |
|--|--|
| | <p><u>연구개발 업무</u></p> <p><u>3. 제4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</u></p> |
|--|--|